

[부정경쟁행위] 사업상 아이디어, 기술정보 탈취방지목적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



1. 신설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

51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의안심의자료 - 제안이유

52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 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체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적용요건 검토

53

- ◆ 적용상황 제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 영업 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 ◆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 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 관계회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

단서 - 적용대상 제외

54

- ◆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 “공연히 알려진 경우”와 구별되는 다른 내용
- ◆ 당사자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진 것이 아니면 “영업비밀” 해당 but (차)목의 단서 해당 - 부정경쟁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
- ◆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면 (차)목의 단서 적용대상 아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목 적용 가능
- ◆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실무적 포인트

55

-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한 경우 그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
- ◆ 아이디어 제안자, 제공자에게 매우 유리함.
- ◆ 실무상 부정경쟁행위 주장 및 권리보호 청구가 빈발할 가능성 있음
- ◆ 제공한 아이디어, 정보의 구체적 내용, 범위, 제공시기 등 입증 중요
-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권장
-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 급증할 것임

변리사 22년/변호사 14년, 심판소송, 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분쟁,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